

#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7일

경상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비고
			일반	국가 유공자 (보훈청 추천)	장애	저소득층	계	제1차	제2차	
공개경쟁	9급	교육행정	146		10	4	160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사서	28		3	1	32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중 2과목(선택)	
		전산	9		1		10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업(일반기계)	5				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일반전기)	1				1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일반토목)	2				2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비 고
			일반	국가 유공자 (보훈청 추천)	장애	저소득층	계	제1차	제2차	
	9급	시설 (건축)	14				14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8급	간호	1				1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 관리)	1				1	국어 (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기록물분류·평가 (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소계			207		14	5	226			
경력 경쟁	9급	공업 (일반 기계)	1				1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특 성 고 마 이 스 터 고 학 졸 업 (예 정) 자 구 분 모 집
		공업 (일반 전기)	1				1	물리	, 전기기기	
		시설 (일반 토목)	1				1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 (건축)	3				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운전	29	10		1	40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조리	26	3		1	30	사회	위생관계법규	
소계			61	13		2	76			
합계			268	13	14	7	302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교육행정직렬 및 사서직렬의 경우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2. 시험방법

### ㉠ 제1·2차 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

※ 단, 9급 조리 및 운전직렬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만 제1·2차 시험(필기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 필기시험 과목수 및 시간

구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 사서, 전산, 공업, 시설, 간호	기록관리	공업, 시설	조리, 운전
과목수	5과목	7과목	3과목	2과목
시험시간	100분	140분	60분	40분

## 3. 응시자격

### ㉠ 응시자격 결격사유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일]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응시연령

구 분	직급 및 직렬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교육행정, 사서, 전산, 공업, 시설) 8급(간호)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연구사(기록연구)	20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공업, 시설, 조리, 운전)	18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 경력경쟁(공업·시설)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임용계획”에 의함

 거주지 제한

- ▶ 2017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2017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3년 이상인 사람

-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성별 : 제한없음**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 제한**

- ▶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  
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공개경쟁] 간호, 전산, 사서, 기록연구, [경력경쟁] 운전,  
조리, 공업, 시설의 경우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급	직렬	직류	학력 자격(면허)증 경력 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8급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9급	전산	전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기록 연구사	기록 연구	기록 관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 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 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단, 2011.5.23.이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경우에 한하며, 2011.5.23.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하여야 함)	

구분	계급	직렬	직류	학력 자격(면허)증 경력 제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운전	운전	1.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관만 해당됨
		조리	조리	조리사 면허 취득 후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업	일반 전기	해당(관련) 학과: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공업	일반 기계	해당(관련) 학과: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시설	건축	해당(관련) 학과: 건축(건축설비)
		시설	일반 토목	해당(관련) 학과: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 **운전직렬**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운전면허)은 유효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단, ①-1항 또는 ①-2항의 경우 자격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①-1.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7. 3. 7.) 이전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고, 이 경우 군운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 생략]

(※ 단, 대형버스 운전경력이란 대형버스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것임)

-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

①-2.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당해시험 시행 공고일(2017. 3. 7.) 이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관만 해당됨)

② 2012. 3. 7.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③ 2012. 3. 7. 이후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사고 사실이 없는 사람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공고문에 별첨으로 첨부한 “경상남도내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 ▶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응시대상자 중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운전·조리직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2017. 3. 17.(금)까지 해당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추천과는 별도로 당해시험의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추천 관련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창원지방보훈청(☎055-981-56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조리직렬 응시 대상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운전·조리)]을 반드시 숙지하여 제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 ▶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보훈청추천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 ▶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 응시대상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 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 4. 문제제출

-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문제 공개여부	문제책 회수 여부
위탁 출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개	미회수
공동 출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과목	비공개	회수

## 5.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b>접수기간</b> 2017.4.17.(월) ~2017.4.21.(금) <b>취소기간</b> 2017.4.24.(월) ~2017.4.26.(수)	필기시험	2017.6.5.(월) 10:00	<b>2017.6.17.(토)</b> 10:00	2017.7.21.(금) 10:00
	면접시험	2017.7.21.(금) 10:00	<b>2017.8.5.(토)</b> 10:00	2017.8.22.(화) 10:00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추천서 서류 제출일 : 2017. 4. 3.(월) ~ 4. 7.(금) ※ 운전·조리직렬 서류 제출일 : 2017. 4. 27.(목) ~ 2017. 5. 4.(목) ※ 운전·조리직렬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대상자) 발표일 : 2017. 5. 19.(금)				

※ 응시표 출력기간 : 2017.6.12.(월) 10:00 ~ 2017.6.17.(토) 필기시험당일까지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 행정정보/ 시험정보/ 임용시험/ 지방공무원시험  
게시판 및 경상남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edurecruit.gne.go.kr/cso\\_cmm\\_cm99\\_001.do](http://edurecruit.gne.go.kr/cso_cmm_cm99_001.do))에  
공고하며, 합격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는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ne.go.kr>)  
에 공고합니다.

## 6.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17. 4.17.(월) 09:00 ~ 4.21.(금) 18:00까지
- ▶ **접수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edurecruit.gne.go.kr/cso\\_cmm\\_cm99\\_001.do](http://edurecruit.gne.go.kr/cso_cmm_cm99_001.do))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24:00 ~ 08:00 사이 우리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처리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처음 접속한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랍니다.
  - ※ 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되며, 접수마감일에 원서 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취소** : 2017. 4.24.(월) 09:00 ~ 4.26.(수)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도 접수 취소 가능)
- ▶ **기 타**
  - 응시수수료(기록연구사 7,000원/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계좌이체)이 소요됩니다.
    -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응시자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원서 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신용카드(체크카드 제외), 계좌이체 방법으로 접수기간 마감일(2017.4.21. 18:00) 전까지 납부하여야만 접수 처리됩니다.(휴대폰 결제 가능)
  - 원서 접수 시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후 응시료 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 출력 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 원서 접수 사이트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매뉴얼」 참고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9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 형식 파일만 가능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써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 모든 응시대상자는 창원시 소재 필기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됩니다.
-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마감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다만, 가산특전 관련사항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입력 가능)
- ▶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하고, 접수 마감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 ▶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 주민등록초본,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사본, 저소득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
- ▶ 공업(일반전기), 공업(일반기계), 시설(일반토목), 시설(건축) 직렬의 경력경쟁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 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 운전·조리직렬 중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창원지방보훈청으로부터 추천 받은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접수하는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 원서 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 PC환경은 운영체제 윈도우 7, 8(32bit), 익스플로러 버전 7.0~11.0(32bit), 크롬 42~44(32bit)은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

- ▶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2017. 6. 12.(월) 10:00부터 2017. 6. 17.(토) (필기시험 당일)까지 출력 가능합니다.  
 ※ 응시표는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기간 이후에 부여합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 (2017.6.12.이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li> <li>•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각각 적용</li> </ul>
의사상자 대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1개, 직렬별 1개)</li> <li>• 가산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시 적용</li> </ul>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1개]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 [직렬별 가산점 1개]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의사상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만 가점 반영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하며, 의사상자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관련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함)

### ▶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 분야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연구사·8·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단, 2012.1.1.이전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인정(2·3급 제외) 합니다.]

▶ **직류별 가산점**

▶ **직렬(직류)별 가산점**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9급		변호사	5%
공업(일반전기) 9급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5%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3%
공업(일반기계) 9급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5%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관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관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		3%

직렬(직류) ·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시설(건축) 9급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5%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시설(일반토목) 9급	기술사 : 기 사 :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5%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가산비율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의사상자 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자 증서번호 또는 의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관련부서로 가산비율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 또는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특전”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특전”에 모두 해당될 경우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 허위로 가산점을 입력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선발예정인원 5명 미만과 경력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음

 임용목표 : 30%

-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실시방법

-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9.

## 유의사항

-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수정액, 수정 테이프 등의 사용 및 작성 상의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과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스마트안경, 전자시계(스마트워치 포함)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될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시험 종료 후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위탁 출제한 문제지는 회수하지 않습니다.】
-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10.

-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 일 7일 전까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ne.go.kr>)에 공고합니다.
- ㉮ 필기시험에서 과락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하여야 과락에 해당되지 않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법령을 따릅니다.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최종 합격 후 근무예정지역은 **경상남도 내 전 지역**으로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5-268-1355)





[서식 1-2]

**「9급 조리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조리사 경력 증명서**

[구분 :일반,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저소득층]

[ 접수번호 : ]

<b>집단급식소 조리사 경력증명서</b>					
	(전화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상근 및 비상근여부
	기    간	인정기간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 . . ~ . . .	년    월    일			
2017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b>작성요령</b>					
※ 주업무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사 직무를 수행 하는 자에 대하여 발급하되, 담당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응시대상은 조리사 면허소지하고 집단급식소에서 2년이상 조리사로 근무한 자					
※ 상근이란? 주업무를 조리사 직무로 하되,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이상 정규 근무한 형태를 말함 (이외 시간제 근무자 등은 비상근)					
※ 위 증명서는 반드시 대표자의 최종 확인 후 발급자가 기재하여 증명서를 기재할 것 (응시자는 서명란만 기재 가능)					
※ 위 증명서를 허위 등으로 발급할 경우 합격 취소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될 수 있음					

※상단의 구분란 [일반, 국가유공자(보훈청추천), 저소득층] 에 ○ 하세요.

